

## 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부안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4. 27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견책(4명), 변상(7명), 경고(8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- 어선어업 조업실적 미충족으로 인한 대손보전 불인정
  - 금융어업자금대출 기한연장 시 용자기간 중 조업실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대출을 연장한 결과 조건 미충족 사유로 대손보전 신청채권 전액 불인정을 받음.
  
- 기업시설자금대출 담보취득 부적정
  -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시 담보물건의 권리관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압류등기가 선순위 권리액에 포함되어 대출한도를 초과하였음.
  
-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부적정 등
  -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시 차주의 자기자본예치계좌 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였으며, 주택 완공 후 채권보전 및 사후관리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.
  
- 영업점장 특인대출 부실 발생
  - 영업점장 특인대출 취급 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연체되어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음.
  
-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 소홀
  - 토지매입목적의 기업시설일반자금 대출 취급 시 소요자금에 따른 대출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가용 담보가액으로만 산출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음.
  
- 상호금융 대출금 연체율 관리 철저
  - 연체율 감축 세부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채권 관리와 부실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의 적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< 관련법규 >

- 「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」제11조(대손보전 대상)
- 「정책여신업무방법」 제96조(정의), 제117조(기한연장 및 재약정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5조(대출금의 용도), 제8조(소요자금 대출가능한도), 제15조(대출상당), 제19조(대출서류의 징구 및 확인), 제42조(승인대상 대출금), 제48조의3(심사대상), 제48조의4(운영), 제48조6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), 제80조의3(대출한도 산출), 제170조(담보취득금지), 제225조의2(대손보전 대상, 범위, 한도, 비율 등), 제259조(후취담보 취득시 유의사항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2편 제20조(영업점장 특인대출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3편 제3조(상당 및 서류징구), 제45조(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), 제46조(시설자금 소요자금 산정), 제46조의2(시설자금 대출한도), 제48조(대출금의 지급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5편 제455조(대출한도), 제457조(특약사항), 제460조(대출금의 지급), 제463조(채권보전)
- 「상호금융 여신규정」 제10조(심사 및 승인)
- 「상호금융 채권관리업무방법」 제1편 제1장 제4조의2(연체율 등 관리)
- 「회원조합 감사규정」 제31조(직원에 대한 제재), 제32조(기타 조치)
- 「회원조합징계.변상 업무처리규정」 제12조(징계양정기준) <별표> 징계양정기준표, 제19조(변상책임의 발생요건)부터 제23조(변상판정 의결)까지
- 「회원조합 감사규정」 제32조(기타 조치)